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10 . . (제 회)	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최기영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개정이유

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시 유사·중복점검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ISMS-P 인증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ISMS-P 인증제도와 유사·중복 점검제도의 부담해소

- 1)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뿐만 아니라 자율대상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 추가
- 2) 교육부 수준진단(대학)과 ISMS 제도간 상호 인정* 근거 추가

* 대학이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80점 이상 획득 시 ISMS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7조제2항”을 “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”으로, “받아야”를 “받고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 제47조의3 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3조제3호”를 “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2조의2”로, “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”를 “개인정보 보호”로 하며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영 제49조제2항제1호나 목에 해당하는 자가 「전자정부법」 제56조에 따라 전년도 보안조치. 제3조제3항의 “정보보호 조치 결과보고서 등”을 “정보보호 조치 결과보고서, 「전자정부법」 제56조에 따른 전년도 보안조치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과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(재개정안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	제3조(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</u> ----- ----- <u>받고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47조의3 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3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	2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2조의2----- <u>개인정보 보호</u> 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4.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영 제49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「전자정부법」 제56조에 따른 전년도 보안조치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	③ ----- -----

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심사
일부의 생략을 신청하는 서류에
국제표준 정보보호인증서, 정보
보호 조치 결과보고서 등 인증
심사의 일부 생략 대상인 사실
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
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----- 정보
보호 조치 결과보고서, 「전자
정부법」 제56조에 따른 전년
도 보안조치에 관하여 과학기
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
결과 등 -----

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463